

2026 노무2 GS2

행정쟁송

손승주 선생님

제 6 회 참고답안

합격의법학원

번호 < 문제 17

2. 행정의 정리

논점의 정리 논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사안에서 처분의 근거 법규 변경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등성
인정되 않은 사실 경위 ~~변경~~ 기속력에 따른 처분의 효력
변경 않은 것 변경.

2. 취소의 기속력

1. 의미

처분을 ~~취소~~ 취소한 후 행정안정 및 그 사실에 관해 당초의
행정행위 그 밖의 사실에 행정행위 기속력 (행위동등성 (이하 '행
위동등성'이라 함) 제 3호 제1항)

2. 기속력의 범위

(1) 전처리의 경우

기속력의 범위 상환이 없는 전처리의 경우 있다. ① 기속력 같은
행정행위로 보는 기속력 ② 기속력은 다른 특수한 효력이라고 보는

특수회계성이 있다

(2) 관계

① "관계"는 중재는 기록이나 기록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② 회계는 '기록'은 원형관계에서 인지는 주로, 행정관계
 관계 행정관계 * 행정관계 지계 여러 행정의 의무를 지는
 기록을 하는 것이, '기록'은 전도 관계로 도출과 같은 주로
 관계 기록과 이해와 동시, 전도 도출에 관한 관계 부별이
~~부별~~ 주로 선점관계가 되거나 분산관계에 관한 경우 부에서 전도
 다 다른 관계를 해하는 관행 인지는 기록을 하는 것에 대해
기록과 기록을 이해한 보인다.

(3) 중요성

'기록'은 행정관계 관계 관계(행정관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행정 효과이다, '기록'은 부담이 본 전도 또는 기록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행정 관계 효과 효과 특수 효과 효과
 있다.

— **특수한 책임량이 보인다**
대만 문제의 배경과 무는 능력에 비해 분량이 과다하다
 2. 기록과 행정 **분량** **중요성이 중요하다.** **모방담안 스텝으로 참여주세요!**

< 문제 27

I 민사소송에서 승판부제에 관하여

(1) 2명제 2명

사안에서 민사소송에서 1회분의 호소권 유언하게 상판승 판판판판
할 수 있는 문제이다

2 민사소송에서 승판부제

(1) ~~2명제~~ 2명제

1회분의 호소권은 불가항적, 불가항적 등이 있다. 그를 호소권
행위행위에 하자가 없다거나 권한은 가진에 대해 하소권이 부여되는
무효한 것인 용무되는 일을 볼 수 있다

(2) 1회분의 호소권이 승판부제인 경우

1회분의 호소권이 승판부제인 경우 ① 1회분의 하자가 존재. 항소권
행위 항소권부담이므로 행위 1회분의 항소권부담 항소권으로 이를 권제인
권제인 항소권, ② 1회분의 귀책이 인정되면 항소 항소권으로 볼 수 있다

이른 경정 때에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경정하게 작성되었습니

(3) 처분의 기판이 경정된 것

처분의 기판이 경정된 것 민사법에서 111항을 보면 효력을 잃는 것에 대해 기판효력이 있고, "중재"는 중재의 집행이다. 생각하면 처분의 기판 효력을 인정하는 것 중재로 중재라고 한다

3. 상행의 과잉

부의 부담을 반환가 인정이 되어서 상행은 원인이 '상행 원인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 상행 원인이 없는 것에 해당하면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효력이 경정된다.

상행이라는 부담이 무효를 전제하고 있는 것, 부담이 무효인 것에는 공정의 관해 상행이 111항을 보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간접원래 원래이다. 공정 부담이다. 공정 부담이다.

- 부담이득반환형주의 원인
- 원인은 처분의 효력을 가하는 것.
- 공정에 따라 부담을 전제해서 판정한다

부의 부담을 반환하는 인정을 할 수 있다.

가정 공정 부담!!

4

*

Ⅱ 취소권이 부당해산 소송 제기권 기법

1. 기판력 기법: 취소권이 부당해산소송 제기권 기법 기판이 판결의 효력 기판이 취소권 기판이 아니다

2. 부당해산 소송의 권리

(1) 부당해산 소송의 권리
부당해산 소송이 인정되면 처분권과 효력 모두 ~~소멸~~ 소멸하여
를 해산하는 것이다 (행소법 제 4조 제 2항)

(2) 부당해산 취소권의 구분

1) 본래권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
기판 기법 부당해산, 기판 기법 취소권 인정

2) 처분권

① 처분의 기판이 판결의 효력의 기판으로 소멸 기판, 기판
의 효력 기판 기판은 부당해산, 판결의 효력 기판은 취소권 또는
소멸 기판, ② 기판은 판결의 효력 기판의
기판 부당해산, 판결의 효력 기판은 판결의 효력
③ 판결의 효력 기판은 판결의 효력 기판 또는 판결의 효력 기판
이 있다

3) 권제

"권제"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요한 점의 증명으로 인정되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행정행위 무효가 되고 그에 중재·명령으로
안정

A 정외의견

행정행위 요건상 중요한 점의 증명으로 인정되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
되면 무효로 보는 중재·명령으로 인정

(3) 취소권이 부당항목으로 제기된 때

1) 취재권

취소권이 부당항목으로 제기된 때 취소권의 요건 갖추지 못한
기각판결이 안정, 취소권의 요건 갖추지 못한 취소판결 할 수
없다

이전대립

① 부당항목 소장은 취소 '취소판결' 권한 취재 권력이

1) 본계상

부동산 소유자는 임의행위 행위의 소지 권원에 관한 주관 증명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가능성의 존재 여부

2) 권리 대립 및 권리

이의 권리 대립이 있을 때, "권리"라는 사실관계는 행위에

대한 객이므로 주관 증명 요건은 사실관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관용구멍없이는 안된다

3) 정외의견

위) 존재시킬 행정행위가 없어서 안된다

> 권리가 다른 과목
각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권리가 같은 임의행위 관련해서 가능한지, 주관 증명
없이 적용되는지

3. 사변의 경우

부동산 부속물인 도랑은 계곡인 것이, 부속물인 도랑이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주관 증명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회권이 일정한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예상하는 것에도 사실관계가 있을 때

4. 사변의 경우

사실관계가 있을 때

- 6 | 하에 보 -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